

#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연구\*

## A Study on the Credential System of Librarian in Korea

정 동 열(Dong-Youl Jeong)\*\*

### 목 차

- |                           |                      |
|---------------------------|----------------------|
| 1. 서론                     | 3.5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
| 2. 사서자격제도의 현황분석과 외국의 사례연구 | 4.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제안     |
| 2.1 현행 사서자격제도와 문제점        | 4.1 기본 방향            |
| 2.2 외국의 사서자격제도 사례분석       | 4.2 내부 전문성 강화 모형     |
| 3.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4.3 전공이수 최소학점제 모형    |
| 3.1 설문조사의 개요              | 4.4 자격시험제도 모형        |
| 3.2 사서자격 부여 방법 및 구분       | 4.5 전문대학원 모형         |
| 3.3 사서자격 시험제도             | 4.6 개선안 모형 비교        |
| 3.4 전공 이수학점 기준 및 사서의 직명   | 5. 결론                |

### 초 록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변화와 대학교육정책의 변화로 야기되어 온 사서자격제도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 제기,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분석, 국내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내부 전문성 강화 모형, 전공이수 최소학점제 모형, 자격시험제도 모형, 전문대학원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네 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앞으로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보다 적합한 새로운 모형의 사서자격제도 개발이 요구된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 credential system of libraria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s various aspects of credential system in order to find out characteristics,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drawn from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analysis, critical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of six countries, and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Four different kinds of model are suggested. Those are 'Internal Competency Model', 'Minimum Credits Model', 'Licence Examination Model', 'Graduate School Model'. This study also suggests further research to develop more adequate credential system of librarian in Korea.

키워드: 사서자격, 사서자격제도, 사서자격모형

Credential, Credential System, Credential Model

\* 본 연구는 2007년도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정책현안과제 연구의 일부임.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yjeong@ewha.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5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6월 10일

## 1. 서론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이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정보요구에 양질의 봉사를 통하여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전문성이 한층 더 요구되는 실정이다. 도서관의 전문성 강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사서의 전문성이다.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봉사는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디지털 정보자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역할이나 기능의 변화에 따른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재조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러면 과연 사서직의 전문성에 무엇이 문제인가?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거의 대부분 사서를 양성하는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즉, 사서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내부적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대학에서 시작된 지 50년이 되었으며, 사서자격제도가 시행된 지 40여 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사서에 대한 전문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사회적 권위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과정과 쉽게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대학교육정책의 변화로 학부제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는 사서직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학부제 실시 이전에

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을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사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학부제 실시 후에는 대부분 대학에서 36학점 내외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있어 사서의 전문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직에서 사서자격처럼 적은 학점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이러한 사서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저하는 심도 있는 교과목의 개발이 어렵게 되며, 전문직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변화와 대학교육정책의 변화로 야기되어 온 사서자격제도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합리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사서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사서자격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하여 외국의 사서자격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학계와 도서관 실무현장의 다양한 의견 분석을 통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추후 국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서자격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서직 제도를 포함한 여타 관련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나 가능한 협의의 사서자격제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 2. 사서자격제도의 현황분석과 외국의 사례연구

### 2.1 현행 사서자격제도와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의 중심적인 골격은 2급정사서와 준사서 양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급정사서는 법적으로 대학에 설치된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문헌정보교육과 포함) 혹은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졸업과 동시

에 부여하게 되며, 준사서는 2년제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가장 큰 흐름이다. 2006년 10월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의 시행령 제4조 [사서직원 등]과 그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별표 3]에 의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자격의 구분에 따라 <표 1>과 같이 여러 가지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1급 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의 박사 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2급 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 또는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비고: 법 제31조제2항과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공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하여 최소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또한 사서직원의 자격구분에서 준사서로부터 2급정사서, 1급정사서로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교육요건, 자격증 취득, 근무경력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요건에 의거하여 2006년 말 현재 자격요건별로 사서자격증 교부자 누계 현황은 1급 정사서 1,273명, 2급정사서 34,876명, 준사서 25,023명으로 전체 61,172명에 이른다. 자격별 취득요건을 보면 1급정사서는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면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1급정사서 자격요건 3), 2급정사서의 경우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2급정사서 자격요건 1), 그리고 준사서는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준사서 자격요건 1과 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사서자격제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사서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자격에 대한 전문성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우선 전문성 문제는 많은 대학에서 학부제의 시행으로 전공이수 최소학점이 과거 학과제에 비하여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과거 학과제에서는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에서 60학점 내외의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였지만, 현행 학부제에서 36학점 정도의 취득으로 전공으로 인정되고 있다. 전공이수 학점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문직 사서로서의 전문성

문제가 심각한 자격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학부제로 인한 전공 이수학점의 하향 조정은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전공자가 현재 60학점 정도를 이수하여 준사서 자격을 인정받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서직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사서직급에 관련된 문제도 있다. 사서의 자격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도서관에서 사서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이러한 전문자격증과 무관하게 배당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은 공무원 직급에 따라 채용되고 있어 사서직의 전문성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김용근 2005).

결론적으로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현재까지의 선행문헌이나 연구보고에 따르면 사서자격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격제도는 사회적 권위나 전문성이 약하여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 2.2 외국의 사서자격제도 사례분석

외국의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은 사서의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며, 특히 전문직 단체의 역할이 전문직 사서의 양성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 도서관 업무에 있어 전문직과 준전문직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전문화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게 된다.

가. 미국의 사서자격제도

미국의 120여 문헌정보학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사서의 자격제도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제도( accreditation system)를 통해서 사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결정하고 있다. ALA는 개별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그 교육의 질을 승인함으로써 사서양성 교육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도서관 현장에서는 승인을 받은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배출된 사서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

ALA(2003)의 '문헌정보학 교육과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보고서(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and Human Utilization: A Statement of Policy)'에서는 사서자격 조건 및 전문직과 전문직 보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 2>와 같이 전문직 사서와 전문직 보조 직군으로 나누어 그 자격요건과 책임업무의 성질이나 한계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ALA는 문헌정보학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도서관 실무현장에서 사서로 근무

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서의 직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각각의 자격구분 내에서 세부적인 직업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임사서의 경우, 도서관장 혹은 부관장, 사서장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서의 경우는 정보검색사서, 경제전문사서, 아동전문사서, 목록사서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나. 영국의 사서자격제도

영국의 사서자격제도는 매우 엄격하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성격의 전문단체인 '공인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에서 개인에게 전문직 사서자격을 '공인'함으로써 자격 취득이 이루어진다. 2002년 이전까지는 영국도서관협회에서 사서자격증을 심사하여 교부하였으나, 그 이후 CILIP에서 '도서관정보전문가'라는 명칭으로 공인하고 있다.

영국의 전문직 사서자격은 사서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부여되

<표 2> 미국 도서관 사서의 전문직과 전문직 보조

자격	기본 자격요건	책임업무의 특성
선임사서 (Senior Librarian)	• 사서의 자격요건에 관련 경력 • 전문직 계속교육	• 도서관 행정전반의 최상위 업무 • 사서직 및 주제분야에 대한 뛰어난 지식
사서(Librarian)	•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 도서관 전반의 독립적이며 전문적 책임업무 • 규정과 절차 및 도서관 문제 분석 및 해결
준사서 (LIS Associate)	• 학사학위 + 문헌정보학 교과목 수강 혹은 이수	• 도서관 전반에 광범위한 경험이 필요 • 훈련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험적 업무로 대출, 보존, 검색, 목록의 복사 등
사서보조 (LIS Assistant)	• 2년제 대학의 학위 •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 훈련과 관련 기술	• 기존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보조 직원으로 서 업무 수행
사무원(Clerk)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 개별 도서관에서 요구되는 보조업무

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실무적 훈련을 수료한 후 CILIP에 자격을 신청하여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사서직이 전문적 지식과 함께 현장의 실무적 훈련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에서 전문직 사서자격은 CILIP의 회원자격을 신청하여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CILIP의 회원자격(membership)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인도서관정보전문가(Chartered LIS Professionals)' 자격은 CILIP이 승인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거나, 문헌정보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CILIP이 승인한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기존 CILIP 회원의 지도와 감독 하에 1년 이상 상시근무를 통한 실무경험을 쌓은 후에 신청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다(Route A). 다른 방법으로는 CILIP이 승인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에 CILIP이 인정하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안내서에 따라 개인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2년 이상 상시근무를 통한 실무경험을 쌓은 후에 회원자격을 신청하여 취득하게 된다(Route B). 따라서 영국의 엄격한 자격제도는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성공적인 전문적 경험을 쌓은 후에 취득하는 전문직 증명서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공인도서관정보전문가'보다 상위의 전문직 사서자격으로 CILIP의 '특별회원자격(Fellowship)'을 통하여 부여된다. CILIP의 회원자격으로 5년 이상 전문적인 경험을 통하여 CILIP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도서관정보전문직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전문 사서직이 아닌 도서관 보조원도 지식과

경력을 쌓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 The City and Guides of London Institute에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경우 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에서 능력에 따라 도서관 기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다. 독일의 사서자격제도

독일의 사서자격은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제도와 흡사한 교육적 제도에 근거하고 있으나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가도서관을 비롯한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서는 국가공무원으로 그 자격기준과 등급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사서자격 구분을 <표 3>과 같이 전문직과 준전문직으로 양분하고, 전문직을 다시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준전문직을 3등급과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의 전문직 사서는 '인증사서(Certified Librarians)'라 부르며, 종합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과정을 마치면 전문직 2등급 사서(일등사서)로 시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2급정사서와 흡사한 자격이다. 1등급 사서인 전문직 사서는 대학에서 주제 배경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도서관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그 자격은 '과학사서', '인문사서', 그리고 '문헌정보학 석사'로 구분된다. 3등급은 준전문직 사서로 도서관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이나 기록관리, 일반 정보센터, 문서관 등에서 초보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4등급은 도서관 사무원으로 특

〈표 3〉 독일 사서의 자격구분과 업무내용

자격구분		자격요건	업무 내용
전문직 사서	1등급 (전문직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학위(주제배경)</li> <li>• 대학원에서 도서관 관련 교육 혹은 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봉사와 학술적 질의, 주제전문분야의 문헌조사</li> <li>• 경영계획, 장서개발, 수서 및 예산 책임</li> </ul>
	2등급 (일등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대학 문헌정보학 학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전반의 독립적이며 전문적 책임업무</li> <li>• 규정과 절차 및 도서관 문제 분석 및 해결</li> </ul>
준전문직 사서	3등급 (도서관 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직업훈련프로그램 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서 준비, 기초정보자료 제공 지원</li> <li>• 직원 훈련과 견학 담당, 인보이스 업무</li> </ul>
	4등급 (도서관 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활동, 복사업무, 프린트, 홍보자료 발송</li> <li>• 통계자료 수집, 서신왕래 등</li> </ul>

정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관계로 도서관 관련 특별한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Federal Union of German Library Association 2003).

라. 프랑스의 사서자격제도

프랑스도 영국이나 미국,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문직 사서와 일반 사서에 대한 업무와 책임을 엄격히 구분하여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문직 사서(Conservateur)의 자격은 사서를 양성하는 국립학교(Ecole Nationale des Chartes)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가시험제도’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사서(Bibliothecaire)의 자격은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경험을 가진 자들로 통상 도서관 직원을 칭하게 된다.

마. 일본의 사서자격제도

일본의 사서자격제도는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제도처럼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국가자격인 동시에 명칭을 독점하는 자격에 해당된다. 사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방법이 도서관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

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서자격제도와 달리 전문성이나 권위가 약하며,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통칭 사서로 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도서관법」 제1장 제4조 제1항에서는 세부 직명으로서의 ‘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직 직원을 사서 및 사서보로 칭한다’고 규정하고, ‘사서는 도서관의 전문직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사서보는 사서의 직무를 돕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일본의 상급사서, 사서와 사서보의 자격요건은 〈표 4〉와 같다.

일본의 사서자격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서강습을 통한 자격증 남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자격제도를 강화하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1996년에 문부성 사회교육분과심의회가 ‘사회교육주사, 학예원 및 사서의 양성·연수 등의 개선방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명칭제도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도서관협회에 ‘전문직원 인정제도 특별검토팀’이 구성되어 ‘사서직 인정자격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3년 제2차 보고에서 제안된 ‘상급사서제’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에서 중

〈표 4〉 일본의 사서 자격구분

자격구분	자격요건
상급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및 그에 준하는 자</li> <li>• 「도서관법」 제4조의 사서자격을 유지하는 자</li> <li>• 도서관협회 회원</li> <li>• 도서관 실무경험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li> <li>• 도서관협회의 연수를 수강하고 수료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협회 중견직원 staff-up 연수 또는 그것에 상당하는 연수</li> <li>- 도서관협회 중견직원 staff-up 연수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협회 주최의 연수 또는 그것에 상당하는 연수 후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ul> </li> <li>•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논문을 제출한 자</li> </ul>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강습을 수료한 자</li> <li>•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li> <li>• 사서보(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의 부속도서관의 직원으로 사서보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로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강습을 수료한 자</li> </ul>
사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li> <li>•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 또는 고등전문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서보의 강습을 수료한 자</li> </ul>

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서의 행정체계 내에서의 전문성 및 사회적 인지를 제고시키는데 있다. 즉, 상급사서제의 핵심은 연수참여나 학위취득, 학술활동 등을 통한 사서직원의 다양한 활동을 점수화하여 상급사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5년마다 재인정(갱신)하는 방법으로 사서직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윤희운 2004).

바. 대만의 사서자격제도

대만은 사서의 명칭을 ‘도서관전업인원(圖書館專業人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만의 사서 자격요건은 대만 교육부 도서관사업위원회(2002)의 「圖書館專業人員資格認定之條件」에서 첫째, 국가공무원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의 도서·정보관리류과에 합격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의 도서·정보관리류과 특별고시에 합격하고 임용자격을

취득한 자, 둘째, 국내외 대학의 도서관·정보학과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셋째, 국내외 대학을 졸업하고 각급 주관기관의 도서관에서 수습과정을 거친 후 대학 및 도서관 전문단체가 시행하는 도서관·정보학과에서 20학점을 취득하거나 320시간을 수업 받은 자, 넷째, 국내외 대학을 졸업하고 도서관학 논저를 공개 출판·발표하거나 도서관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윤희운 2004).

이처럼 대만의 공립도서관 전임관원으로 취업하려면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공무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타 사립의 도서관은 대학의 도서관학 및 관련학과 졸업장을 전업직원 채용의 최저 요건으로 삼고 있다. 대만은 각종 고시를 통한 임용제로 공립도서관의 인력을 충원하고 극히 일부에 한하여 초빙제로 보완하는 양자병행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서관 전업인원의 전문직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에서 제3의 대안으로 '인증제'가 거론되고 있다.

사. 외국의 사서자격제도 비교

외국의 사례로 비교된 6개국의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특징은 전문직 사서로의 자격구분과 자격요건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이다. 우선 사서자격 취득시점에서 자격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자격인증증명서(certIFICATE)는 '인가된 교육기관을 수료할 경우 인증하는 자격증명서'로 졸업장과 유사한 성격의 자격이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특정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공식적으로 독점적 활동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전문직 사서자격의 기본 출발점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인증제도 유형이다. 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사서 혹은 공인도서관정보전문가로 불려진다. 그 다음 단계는 실질적인 전문직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면허증 혹은 허가증(LICENSE)은 '자격시험을 거쳐 부여되는 자격증'으로 의사 면허

증, 약사 자격증, 운전 면허증 등이 포함된다. 면허증 제도는 전문직의 직무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여 면허를 소지한 자가 공식적인 배타적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전문직 사서자격은 국가시험제도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는 여러 유형으로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국가공무원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를 통한 자격부여 방법이다.

셋째, 국가 자격증으로서의 증명서(CREDENTIAL)는 '국가기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증, 교사자격증, 2급과 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은 문화관광부장관을 대신하여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교부하고 있다. 독일의 전문직 사서인 인증사서도 종합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과정을 마치면 2등급 사서자격이 부여된다. 일본의 사서자격제도 역시 우리나라와 흡사한 유형으로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자격증에 해당된다. <표 5>는 6개국의 사서자격구분과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혹은 정책적 내용을 요약한 비교표이다.

<표 5> 주요 국가의 사서 자격구분과 자격요건

국가	자격구분	자격요건
미국	선임사서(Senior Librarian)	• 사서의 자격요건에 관련 경력 + 전문직 계속교육
	사서(Librarian)	•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준사서(LIS Associate)	• 학사학위 + 문헌정보학 교과목 수강 혹은 이수
	사서보조(LIS Assistant)	• 2년제 대학의 학위 •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 훈련과 관련 기술
	사무원(Clerk)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영국	특별회원자격(Fellowship)	• CILIP 회원 자격 5년 이상 + CILIP 조건 충족
	공인도서관정보전문가(Chartered LIS)	• 대학원 수료 + CILIP 프로그램 1년 이상 근무 + 회원 자격 신청 • 대학원 수료 + CILIP 프로그램 자체 개발 2년 이상 근무 + 회원 자격 신청
	도서관 보조원	• 도서관 기술 관련 자격증 취득

독일	1등급(전문직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학위(주제배경)</li> <li>• 대학원에서 도서관 관련 교육 혹은 훈련</li> </ul>
	2등급(일등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대학 문헌정보학 학사</li> </ul>
	3등급(도서관 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직업훈련프로그램 수료</li> </ul>
	4등급(도서관 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음</li> </ul>
프랑스	전문직 사서(Conservate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학교(Ecole Nationale des Chartes) 졸업생으로 국가시험 합격자</li> </ul>
	사서(Bibliotheca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졸업자로 실무경험을 가진 도서관 직원</li> </ul>
일본	상급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및 그에 준하는 자</li> <li>• 도서관협회 회원</li> <li>• 「도서관법 제4조의 사서자격을 유지하는 자</li> <li>• 도서관 실무경험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li> <li>• 도서관협회의 연수를 수강하고 수료한 자</li> <li>•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논문을 제출한 자</li> </ul>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강습을 수료한 자</li> <li>•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li> <li>• 사서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강습을 수료한 자</li> </ul>
	사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li> <li>•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 또는 고등전문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서보의 강습을 수료한 자</li> </ul>
대만	도서관전업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의 도서·정보관리류과에 합격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의 도서·정보관리류과 특별고시에 합격한자</li> <li>• 국내외 대학의 도서관·정보학과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li> <li>• 국내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및 도서관 전문단체가 시행하는 도서관·정보학과에서 20학점을 취득하거나 320시간을 수업 받은 자</li> <li>• 국내외 대학을 졸업하고 도서관학 논저를 공개 출판·발표하거나 도서관 실무경력 이 3년 이상인 자</li> </ul>

### 3.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3.1 설문조사의 개요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문헌정보학계 교수집단과 도서관 현장 실무사서들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수집단은 전국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실무사서에 대한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이메일 전송이 가능

한 대학도서관 사서 50명, 공공도서관 사서 50명, 전문도서관 사서 50명 등 총 150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2007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전국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주소록」(2006)에서 이메일 전송이 가능한 171명의 교수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105명의 교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사서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는 150명 중에서 82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분석이 곤란한 2명을 제외한 80명 사서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대학, 성별, 나이, 성별, 지역, 도서관 관중에 관계없이

교수집단과 사서집단으로만 구분하여 응답에 대한 빈도와 의견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주요 문항의 분석은 사서자격 부여 방법 및 구분, 사서자격 시험제도, 전공 이수학점 기준 및 사서의 직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교수집단과 사서집단의 의견이나 견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사서자격 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정 집단의 의견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 3.2 사서자격 부여 방법 및 구분

사서자격의 부여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문항은 교수집단과 사서집단 간에 의견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교수집단에서는 학부제에 따른 전공학점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공 최소 학점 기준을 정해 이를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견이 42.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서집단에서는 62.50%가 사서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사서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교수집단은 현행대로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사서자격을 부여(21.90%)하는 방안과 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사서자격의 공신력을 강화(22.86%)하는 방안에 대하여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사서집단은 현행대로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사서자격을 부여(8.75%)하는 방안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서집단의 응답은 현행 사서자격 부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사서자격의 구분에 대한 응답은 현재의 사서자격 구분에서 1급정사서와 2급정사서의 구분을 없애고 준사서, 사서, 주제전문사서의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교수집단과 사서집단이 각각 42.86%와 82.50%를 보였다. 이는 최근 도서관봉사에서 주제전

<표 6> 사서자격 부여 방법 및 사서자격 구분

단위: 명(%)

항 목 분 석		교수집단 응답수	사서집단 응답수
사서자격 부여방법	현행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자격 부여	23(21.90)	7( 8.75)
	자격 시험제도 도입	24(22.86)	50(62.50)
	전공이수 최소학점 기준 설정	45(42.86)	12(15.00)
	별도의 필요한 과목 지정하여 자격 부여	10( 9.52)	8(10.00)
	기타	3( 2.86)	3( 3.75)
사서자격 구분	현행대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	41(39.04)	10(12.50)
	일률적으로 구분없이 사서	1( 0.01)	1( 1.25)
	준사서, 사서(1급과 2급 구분없음), 주제전문사서	45(42.86)	66(82.50)
	기타	15(14.29)	3( 3.75)
사서자격 취득시 우선 요소	도서관 실무경력	29(27.62)	54(67.50)
	학력	38(36.19)	8(10.00)
	전문교육과정 이수 정도	20(19.05)	13(16.25)
	기타	18(17.14)	5( 6.25)

문사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사서집단에서는 1급정사서와 2급정사서의 구분이 도서관 실무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수집단에서는 현행대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의 구분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39.0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밖의 기타 의견으로는 현행 사서자격 구분에 주제전문사서를 추가하는 방안, 준사서를 3급정사서로 명명, 사서의 전문성을 직명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수석사서, 선임사서, 보조사서의 개념 도입하자는 의견, 사서자격에 대한 구분없이 60학점 이상의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일률적으로 문헌정보사 자격을 부여하되,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사서 직명을 계속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서자격을 현행처럼 구분시에 상위자격을 취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자격요

소에 대한 응답은 교수집단과 사서집단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교수집단은 학력, 도서관 실무경력, 전문교육과정 이수 정도 순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서집단은 도서관 실무경력(67.50%)에 2/3 정도로 응답하여 현장의 업무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 3.3 사서자격 시험제도

사서자격 시험제도를 도입시에 사서자격의 구분에 대한 의견은 <표 7>과 같이 교수집단과 사서집단 모두 준사서는 현행대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사서자격을 유지하며, 1급정사서와 2급정사서의 구분없이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주제전문사서는 실무경력과 연구활동 등을 평가하여 심사하는 의견이 교수집단 35.24%, 사서집단 6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준사

<표 7> 사서자격 시험제도 관련 문항

단위: 명(%)

항 목 분 석		교수집단 응답수	사서집단 응답수
사서자격 시험제도 도입시 자격구분	1급, 2급, 준사서 모두 시험제도 도입	18(17.14)	4( 5.00)
	준사서 현행 유지, 2급정사서 시험제도, 1급정사서 실무경력 및 연구활동 평가	31(29.52)	24(30.00)
	준사서 현행 유지, 1급과 2급 구분없이 통합 시험제도, 주제전문사서 실무경력 평가	37(35.24)	50(62.50)
	기타	19(28.10)	2( 2.50)
사서자격 시험제도 실시 기관	현행대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57(54.29)	55(68.75)
	문화관광부가 직접 주관	33(31.43)	22(27.50)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9( 8.57)	1( 1.25)
	기타	6( 5.71)	2( 2.50)
사서자격 시험과목 순위	1순위	자료조직론 102	자료조직론 76
	2순위	정보검색 92	정보봉사론 74
	3순위	도서관경영 81	정보검색 60
	4순위	장서개발 68	장서개발 54
	5순위	디지털도서관 57	도서관경영 52

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급정사서만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1급정사서는 실무경력 및 연구활동을 평가하여 부여하자는 의견도 교수집단이 29.52%, 사서집단이 30.00%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모두 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2급정사서와 준사서는 현행대로 자격을 부여하고 1급정사서는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준사서와 2급 및 1급정사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제전문사서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거나 해당 전공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부여하자는 의견 등 다양하게 개진되었다. 시험제도는 각 대학의 학생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서자격에 관계없이 시험제도의 도입보다는 경력과 학력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사서자격 시험제도 도입시에 자격시험을 주관할 기관에 대한 응답은 현행대로 한국도서관협회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교수집단(54.29%)과 사서집단(68.75%) 모두 높게 나타나 도서관인의 권익단체로서 한국도서관협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가 직접 주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교수집단 31.43%, 사서집단 27.5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사서자격 시험제도 도입시 필요한 시험과목을 표시하는 문항은 교수집단과 사서집단이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5과목을 선택하는 문항에서 교수집단은 응답자 105명 중에서 자료조직론(분류목록)이 102명, 정보검색 92명, 도서관경영 81명, 장서개발 68명, 디지털도서관 57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문헌정보학개론, 독

서지도론,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봉사론, 정보시스템, 영어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서집단의 응답은 80명 중에서 자료조직론이 76명, 정보봉사론 74명, 정보검색 60명, 장서개발 54명, 도서관경영 52 순으로 나타나 4과목에서 교수집단과 일치하였다. 이어서 문헌정보학개론, 정보학일반, 디지털도서관, 정보시스템, 영어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두 집단간의 약간의 차이는 사서집단이 현장실무와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3.4 전공 이수학점 기준 및 사서의 직명

학부제에 따른 전공학점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공이수 최소학점의 기준을 정할 경우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가는 두 집단이 45학점 이상과 60학점 이상에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표 8 참조). 교수집단은 45학점 이상(50.48%)이 60학점 이상(28.5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학부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사서집단은 60학점 이상(47.50%)이 45학점 이상(37.50%)보다 더 높게 나타나 과거 학과제의 학습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대로 36학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응답도 교수집단에서는 15.24% 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이지만 75학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공 교과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경우 더 이상 전공 이수학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서의 직명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행대로 '사서' 직명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교수집단은 54.29%, 사서집단은 75%로 절대적으로 현재의 직명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

〈표 8〉 전공 이수학점 기준 및 사서의 직명

단위: 명(%)

항 목 분 석		교수집단 응답수	사서집단 응답수
전공이수 최소학점 기준	36학점 이상	16(15.24)	6( 7.50)
	45학점 이상	53(50.48)	30(37.50)
	60학점 이상	30(28.57)	38(47.50)
	75학점 이상	4( 3.81)	6( 7.50)
	기타	2( 1.90)	0( 0.00)
사서의 직명	현행대로 '사서'	57(54.29)	60(75.00)
	정보관리사	31(29.52)	16(20.00)
	문헌정보사	15(14.29)	3( 3.75)
	기타	2( 1.90)	1( 1.25)

음으로 정보관리사와 문헌정보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관리사나 문헌정보사로 직명을 변경하여 전공의 특성과 성격에 부합되게 함과 동시에 사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 3.5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개별적인 의견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서관이 선진국의 수준으로 발전에 대비한 사서자격제도를 강구하여 하며, 자격구분은 도서관 관중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와 특수한 관중에 적합한 선택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처와 학계 및 도서관 현장이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둘째,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정보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용자 정보요구의 다양화에 따른 외부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봉사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훈련이 필요하다. 주제전문사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신입사서이든 경력사서이든 개별 사서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서자격 시험제도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제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정보봉사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 4.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제안

### 4.1 기본 방향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서관 봉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기본 철학이다.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서양성 교육과정의 개혁, 사서의 전문영역 및 활동무대 확대, 지속적인 연수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사서자격제도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학계나 실무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서양성 교육과정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에게 차별없이 자격증이 주어지는 제도는 다른 전문직종에 비하여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서자격증은 사서가 도서관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조건이라는 개념을 탈피하여, 사서가 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는 증서로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즉, 모든 전공자에게 자격증이 주어질 경우 사서자격증의 전문성이나 권위가 없게 되어 별도의 자격증에 대한 당위성이 약하게 되며,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장만으로 충분하다. 수년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졸업과 동시에 주어지는 자격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사서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사서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자격구분과 영역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현행 사서자격제도에서는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사서자격의 전문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사서의 상하 개념만 포함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제전문사서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전문성에 따라 업무의 환경이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자격의 구분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의학전문사서 제도처럼 점차적으로 사서의 자격을 주제별 또는 영역별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직과 준전문직의 업무에 대한 구분은 자격제도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의 업무가 무엇이며, 준전문직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자격조건이 규정되게 된다. 즉,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의 업무 성격과 특성을 구분하여 자격증 등급과 실제 업무 간에 괴리를 줄임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문직과 전문직 보조로 직군을 나누어 그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책임업무의 한계까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각각의 기준에 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개선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연수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내부 전문성 강화 모형), 둘째로 학부제 등 개별 대학의 교육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전공이수 최소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전공이수 최소학점제 모형), 셋째로 전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사서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전문직과 유사한 성격의 대폭적인 개혁을 시행하는 방법(자격시험제도 모형), 넷째,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에 관

계없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학습한 후 문헌정보학 전문대학원에서 전문직 사서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전문대학원 모형) 등이다.

#### 4.2 내부 전문성 강화 모형

내부 전문성 강화 모형의 기본적인 성격은 1966년부터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졸업과 동시에 누구에게나 사서자격(credential)을 부여해 온 현행 사서자격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학의 학부제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부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체적인 실무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전문사서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보완하게 된다. 최근 학부제로 인한 전문성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학의 차이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 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초임사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졸업 후에 초임사서로 진입시 추가적인 별도의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행한 실적은 없으나 가칭 '사서자격 재인증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흡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전문직 사서자격은 사서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에 추가적으로 '공인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ILIP)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실무적 훈련을 수료함으로써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서의 전문적 지식과 현장의 실무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한 성격의 연수교육으로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전문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는 과정이나, 의사고시를 합격한 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의사로 수련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중견사서들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법으로는 일정한 주기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자격 유지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즉, 사서자격에 유효기간을 두어 지속적으로 자격유지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연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최근에 정보검색사나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에 자격에 연한을 두는 방식과 흡사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5~10년 주기로 새로운 전문적 지식을 학습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전문성 저하로 인하여 그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사서직 상황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상급사서제를 두어 도서관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및 사회적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연수참여나 학위취득, 학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점수화하여 5년마다 재인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사서자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수집단과 사서집단 모두 사서자격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반 정도로 높게 나타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내부적 전문성 강화는 어떠한 사서자격제도를 도입



하더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에서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사서자격증이 폐지될 경우, 사서자격증은 소정의 실무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서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전문적인 도서관 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계발과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계속교육은 필수적이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도서관 선진국에서는 사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교육과 계속교육이 도서관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내부 전문성 강화 모형의 장점으로는 현재의 모든 제도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한 갈등이나 행·재정적 지원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점은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원천적으로 사서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형평성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며, 사서직 등급 간의 차별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즉,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된다.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가장 소극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 4.3 전공이수 최소학점제 모형

전공이수 최소학점제 모형은 현행 사서자격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문성과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

여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전공이수 최소학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대학에서 학부제로 인하여 36학점 내외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전공자에게 무조건 부여되는 사서자격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전공자가 현재 60학점 정도를 이수하여 준사서 자격을 인정받는 형평성 문제점을 다소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공이수 최소학점제는 현 제도적 상황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학부제와 관계없이 이미 공과대학이나 예체능대학의 여러 전공에서 도입하여 실시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 '2급정사서 자격증은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포함) 전공 교과과정을 45학점(혹은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부여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자격제도를 채택하게 된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가 45학점(혹은 60학점) 미만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2급정사서 자격증이 부여되지 않아 실무사서로 취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학의 학부제는 개별 대학의 결정사항으로 교육법이나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모든 대학생이 학부제 혹은 복수전공, 부전공을 선택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개별 대학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전공교육이 가능하다. 오히려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화전공제도'의 형태로 특정 전공의 교과과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물론 전공이수 최소학점을 몇 학점으로 할 것인가는 추후에 검토할 문제이나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교수집단은 45학점 이상, 사서집단은 60학점 이상이 합리적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

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서자격의 부여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문항에서 교수집단의 42.86%가 학부제에 따른 전공학점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공이수 최소학점제의 채택을 선호하고 있으나, 사서집단은 15.00%로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공이수 최소학점제 모형의 장점은 과거 학과제의 교육제도에서 경험한 전문직 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설문조사에서 분석되었듯이 교수집단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교수집단에서는 현재의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서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으로 외부의 저항이나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소학점을 이수한 전공자에게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전공자와 자격소지자와 선별적 차별화가 가능하게 되며, 대학의 학부제와 무관하게 대학별로 실시가 가능하다. 국가나 전문직단체에서 특별한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다. 단점으로는 전공이수에 필요한 최소학점만을 규정함에 따라 전문직 사서양성과 관련된 교육내용이나 성격과는 무관하게 되며, 사서자격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자격증 부여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수반되게 되어 사서자격 부여기관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 4.4 자격시험제도 모형

자격시험제도 모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시험을

실시하여 사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가장 개혁적이며, 학계나 도서관 현장에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나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다른 전문직처럼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제도(licence)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전문직은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전공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부여되는 자격증은 전공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행정업무의 간소화 차원에서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서자격 시험제도를 도입시 자격시험 대상자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준사서는 현행대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사서자격을 부여하며, 1급정사서와 2급정사서의 구분없이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주제전문사서는 실무경력과 연구활동등을 평가하여 심사하는 방안이다. 그 밖에 준사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급정사서만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1급정사서는 실무경력 및 연구활동을 평가하여 부여하자는 의견도 상당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사서자격 시험제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방법론은 차후에 논의될 문제이지만, 자격시험제도 도입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으로 가장 큰 명분은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자격시험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사서직 권위와 공신력의 회복이

다. 둘째,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부제로 인한 전공이수 최소학점의 상향 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자격시험과목에 사서직의 전문성에 필요한 핵심 교과목을 포함함으로써 균형성과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공동연구 환경이 구축되어 문헌정보학의 학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예견된다는 점이다. 자격시험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핵심 교과목 개발, 표준화된 자료 및 교재 개발 등 학계와 현장이 협동으로 학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남태우 2002).

사서자격 시험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사서의 전문성을 시험제도를 통해 인증받기 보다는 사서 양성교육의 수준을 높이거나 계속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사서자격 시험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로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제도와 같이 새로운 효용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전문성을 상실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사서자격 시험제도와 유사한 성격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경우,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국가공인시험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 2급과 3급의 경우 학력별로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양성교육기관에 6주에서 24주 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5년에는 약 2만명(이 중 1급이 약 5천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전문성 없는 직종'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격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1급정사서에

해당하는 자격만 시험제도를 채택하여 미봉책에 그치는 오류를 범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격시험제도의 비현실성, 지속적인 단기양성과정에 따른 자격소지자 과잉 공급, 유사한 명칭의 자격증 남발 등은 사서자격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서자격의 부여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문항에 조사되었듯이, 사서집단에서는 62.50%가 사서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사서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교수집단에서는 22.86% 정도가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사서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 사서자격 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대만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전문직 사서와 일반사서에 대한 전문성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전문직 사서(Conservateur)의 자격은 사서를 양성하는 국립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가시험제도'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사서(Bibliothecaire)의 자격은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경험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의 도서·정보관리류과에 합격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의 도서·정보관리류과 특별고시에 합격하고 임용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사서자격 시험제도에 대한 장점은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를 대상을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전문직의 국가자격시험처럼 사회적 인정과 권위를 제고시킬 수 있

다. 또한 사서자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국가자격시험 실시로 인한 전공자의 이탈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배적이다.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함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도서관법의 개정 및 시험시행기관의 지정, 시험과목의 결정 등 제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추후에 대학에서 학부제가 폐지로 전공이수 학점이 과거처럼 60학점 정도로 상향 조정시 자격시험제도의 당위성이 약해지며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 4.5 전문대학원 모형

전문대학원 모형은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에 무관하게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전문직 사서를 문헌정보학 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는 방안이다. 학부에서 문헌정보학 이외의 다른 전공을 배경으로 전문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기법을 학습함으로써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사서자격(certification)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대학원 모형은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승인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사서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년 반 혹은 2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대략 36학점에서 45학점 정도를 전공 이수학점으로 하고 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석사(MLS) 학위논문은 요구하기도 하나 대부분 현장실습과 졸업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미국의 MLS 교육과정은 전문사서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도서관 실무현장에서 전문사서로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원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전문대학원 체제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부과정을 없애고,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게 된다. 지금의 사회복지대학원 교육과정과 동일한 체제이다. 전국의 32개 대학교의 문헌정보학 학부 전공이 일률적으로 대학원 교육체제로 전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교육체제는 몇 개의 대학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거나, 광역시도에 1개 대학 정도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다.

전문대학원 모형의 장점은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모형이다. 정보량의 급속한 증가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단점으로는 사서양성을 위한 국가적 교육시스템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는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든 대학이 동시에 전문대학원 체제를 수용하기 불가능하며, 다양한 교수진과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 4.6 개선안 모형 비교

개선안으로 제시된 네 가지의 사서자격제도별 특성과 장단점 등을 비교하면 <표 9>와 같이 요약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환경 및 도서관 실무현장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전공이수 최소학점 모형이 현실적으로 사서자격제도를 개선을 통한

〈표 9〉 사서자격제도 비교

자격제도	자격 부여 특성	장단점		후속 조치
내부 전문성 강화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교육(신입 및 중견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li> <li>• 사서자격 재인증제도 도입</li> <li>• 전공자에게 조건 없이 자격 부여</li> <li>• 주기적인 추가교육 필요</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업무의 단순화</li> <li>• 추가적인 행재정 지원 불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제도 및 체제 유지</li> <li>• 실무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서의 전문성 확보 어려움</li> <li>• 4년제 대학교과 전문대학의 형평성 문제 미해결</li> <li>• 사서자격 및 등급간 차별성 미해결</li> </ul>	
전공이수 최소 학점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방안</li> <li>• 사서자격의 전문성과 형평성 문제 해결</li> <li>• 선별적 자격부여로 전공자와 자격증 소지자와 차별화</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제와 무관하게 대학별로 실시 가능</li> <li>• 예산 및 인력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법 시행령/시행세칙 개정</li> <li>• 자격 부여기관에서 기준 평가</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에 관계없이 학점으로 자격부여</li> <li>• 사서자격 부여기관의 업무량 증가</li> </ul>	
자격 시험제도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서직의 전문성/권위 제고</li> <li>• 개혁적이며 대폭적 변화</li> <li>• 전공자를 대상으로 국가자격 시험 실시</li> <li>• 학부제 및 이수학점과 무관</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평성 문제 해결</li> <li>• 전공이수 최소학점 상향 조정 효과</li> <li>• 학문발전에 다소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li> <li>• 시험 시행기관 지정</li> <li>• 시험과목 등 제반 절차</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자 이탈현상 초래</li> <li>• 시험시행 예산 및 인력소요</li> </ul>	
전문대학원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전문사서 양성 최선의 방안</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전문사서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인 교육제도 변경</li> <li>• 국가 교육체제 변경</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연한 연장</li> <li>• 교육체제 전환 어려움</li> <li>• 다양한 교수진과 시설 추가 소요</li> </ul>	

전문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분석된다. 내부 전문성 강화 모형은 어떠한 사서자격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부가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제도와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거나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1966부터 문헌정보학(혹은 도서관학) 전공자에게 졸업과 동시에 누구에게나 사서자격을

부여한 자격제도에 대한 논란은 학계와 도서관 실무현장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되었듯이 학부제와 같은 교육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사서자격 부여 방법의 변화에 가장 큰 관심사는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는냐 아니면 전공 최소학점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설문조사의 응답처럼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사서자격 시험제도가 반드시 실시되어 사서의 자격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자격시험 불가피론부터 자격시험 절대 불가 의견까지 매우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격시험을 도입하되 지정된 전공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서자격 시험제도가 이상적인 방안이나 시기상조이며, 인센티브가 없는 현 상태에서 시험제도는 어려우며, 자격시험제도 도입은 몇 개의 대학만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폐과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의 다양성은 대부분 응답자들이 속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사서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국내외 관련 문헌분석 및 외국의 사서자격제도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사서자격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헌정보학계 교수집단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사서자격제도의 유형과 영역 분석, 사서자격요건 분석, 자격부여 방법 등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추후 국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사서자격제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서자격 부여에 대한 전문성과 형평성의 문제이다. 우선 사서자격의 전문성 문제는 대학에서 학부제의 시행으로 전공이수 최소학점이 과거 학과제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형평성 문제는 동일한 논점에서 학부제로 인한 사서자격 취득 전공 이수학점의 하향 조정은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전공자보다 적은 학점을 이수하면서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불합리적인 제도이다.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전문직 사서의 자격 구분과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격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취득 시점에 대한 유형을 보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을 수료할 경우 부여되는 자격증명서(certificate) 제도이다. 이러한 자격증명서 제도에서는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한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문직 교육을 강조하는 체제이다. 프랑스와 대만과 같이 국가 차원의 자격시험을 통하여 자격증(license)이 부여되는 제도와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의 경우처럼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자동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자격증(credential)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현황분석,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분석, 그리고 국내 학계 및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서자격제도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내부 전문성 강화 모형, 전공이수 최소학점 모형, 자격시험제도 모형, 전문대학원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앞으로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복합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최선의 단일 모형 개발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복합적 모형의 추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공이수 최소학점을 규정하거나 자격시험제도를 도입 등에 관계없이 내부적 보완 방안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

시하거나 사서자격 재인증 제도 등 복합적인 제도의 운용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서자격제도 개선과 동시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부차적인 개선사항으로는 사서직의 전문직군 분리, 사서직에 대한 계속교육 체계의 구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에 대한 방안은 정부의 인사행정과 동시에 검토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사서직이 일반 행정직의 직급체계로 구성될 경우 사서의 전문성 강화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서직에 대한 인사행정은 전문직군으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서직에 대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은 전문성 강화와 새로운 지식 습득 차원에서 사서자격제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최근 정보기술 환경의 발달로 인쇄자료와 디지털자료가 공존하는 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서관 봉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도서관 발전의 기본이 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 지식과 정보전달을 담당하는 사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서직의 전문성은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관중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계는 유능한 사서양성 교육에, 현장의 사서는 바람직한 정보봉사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동철. 1999.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 전공의 학부구성 및 사서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4): 157-182.
-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원양성기관 현황.
- 구분영. 2000.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정체성과 미래의 전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93-112.
- 김세훈 등. 2004.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용근. 2005. 한국 사서직에 대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20.
- 김용근. 2002.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282-306.
- 김 욱. 2004. 『사회복지사 이야기』. 서울: 학지사.
- 남태우. 1996. 사서직의 전문성과 국가고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제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5-118.
- 남태우. 1990. 사서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문화』, 265: 13-28.
- 박명규. 2003. 미국의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 『한

- 국비블리아 발표논집』, 9: 87-98.
- 박인웅. 1997. 한국사서직의 전문직화 연구. 『도서관학논집』, 25: 207-223.
- 박준식. 2000. 정보환경의 변화와 사서의 역할변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21-40.
- 안인자. 2003. 사서교사(사서)의 직무분석을 통한 양성기관의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37(3): 79-95.
- 엄영애. 2004. 사서직의 전문직 요건과 수행업무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159-175.
- 엄영애. 1998. 미국·영국·한국 사서직 교육의 비교. 『도서관학논집』, 27: 1-25.
- 윤희윤. 2004. 『사서직제 개선방안 연구』. 2004년 전국도서관대회 발표자료.
- 이영숙. 2003. 우리나라 사서의 국제경쟁력 제고. 『시민과 도서관』, 4(3): 4-26.
- 이용훈. 2002.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도서관』, 57(1): 17-36.
- 이용훈. 2000.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서관』, 55(4): 3-33.
- 이제환.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 이혜연. 2000. 『사서자격제도 개선 논의 경과 및 개선방안.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바람직한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 모색』.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화여자대학교 편집부. 1992. 전문직을 위한 사서교육과 계속교육에 관한 고찰. 『도서관학보』, 9: 58-68.
- 전명숙. 1996. 사서직의 전문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2): 165-187.
- 전혜영. 2007. 의학사서제의 전문성 확보와 발전을 기대하며. 『도서관문화』, 48(1): 43-47.
- 조찬식. 1996. 우리나라 사서직의 역사적 발전: 1961년에서 1979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3): 67-84.
- 최성균. 2005. 『사회복지개론』. 서울: 대왕사.
- 최운실. 1987. 『圖書館體制確立 및 運營活性化 方案研究』.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and Human Resource Utilization: A Statement of Policy.
- Arthur, R. 2005. "Turning training into qualifications." *Library & Information Update* 4(12): 40-41.
- Chartered Institut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2002. Accreditation instrument: Procedures for the accreditation courses. CILIP.
- Federal Union of German Library Association. 2003. Portals to the Past and to the Future Libraries in Germany.
- Gisela M. Webb. 1989.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Libraries*. New York: Haworth Press.
- Kaatrude, P. B. 1982. "Librarian certification and licensing: a brief accounting." *Public Libraries*, 31: 155-157.
- Martin, S. K. 1994. "Librarianship and certifica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9: 567.



- Moran, F. Robert. 2003. "ALA/APA Post-Master's Certification: An Interview with Tom Wilding." *Library Administration & Management* 17(1): 4-5.
- The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 Norman Roberts & Tania Konn. 1991. *Librarians and Professional Status: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Academic Libraries* London: Library Association.
- Ojala, M. 2003. "Certifying Information Professionals." *Online*, 27(2): 5.
- Taylor, Chris. 2006. "National investment." *Information Scotland*, 4(4): 15-16.
- Willett, H. G. 1984. "Certification and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 13-23.
- Winkworth, F; Gannon-Leary, P; Hare, C; Parker, S. The impact of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